

등록(등록금 납부)

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시스템 등록 메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등록금은 반드시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,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 됩니다. 자세한 등록금 납부 기간은 학사 일정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등록금의 반환

반환사유 발생일	일정
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	등록금 전액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	등록금(입학금은 제외)의 6분의 5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등록금(입학금은 제외)의 3분의 2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	등록금(입학금은 제외)의 2분의 1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	반환하지 않음

□ 등록금의 반환기준일

- 당해 학기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한 경우 : 자퇴일
- 현금등록하고 휴학, 다음 학기에 복학하고 자퇴한 경우는 해당 등록학기의 휴학일과 자퇴(제적)일 중 늦은 날짜
- 미복학 제적인 경우 : 휴학일

□ 반환절차

- 자퇴 및 미복학 제적 : 해당대학 행정실에 자퇴원(제적 공문) 및 반환신청서 제출
 - ※재학생 구비서류 : 본인도장, 통장사본(본인)
 - ※신입생 구비서류 : 합격증, 등록금납입증명서, 통장사본(본인)